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3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서일준 · 이양수
김용태 · 배준영 · 이만희
박수민 · 최은석 · 김소희
성일종 · 추경호 · 윤영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·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(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)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.

이에,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

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248조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8조(사위투표죄)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·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(투표사무원·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48條(詐僞投票罪) ① 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を 僞造 ・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方法으로 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 고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・職 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(投票事務員・사전투표 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 한다)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 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.	제248조(사위투표죄)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・변조하여 使用하거나 기타 사위의 方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 고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・직 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(투표사무원・사전투표 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 한다)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 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